

여성폭력피해자

# 회복을 향한 첫걸음

여성폭력피해자  
통합지원 매뉴얼



# 회복을 향한 첫걸음

여성폭력피해자  
통합지원 매뉴얼

|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대처방법 자세히 보기     | 3  |
| 2. 상담 지원           | 6  |
| 3. 시설보호·주거지원       | 8  |
| 4. 의료·심리치료 지원      | 17 |
| 5. 법률지원            | 30 |
| 6. 신변보호            | 41 |
| 7. 수사지원·형사절차상보호    | 48 |
| 8. 경제지원            | 56 |
| 9. 디지털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| 63 |
| 10. 고소장 작성 방법      | 69 |

# 대처방법 자세히 보기

## 유형

## 피해자 대처 요령

### 가정폭력

- 가정폭력발생시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.
- 상담이 필요하거나 집에 머무르기 위험하다면, 즉시 대피하고 아래 번호로 전화하세요.  
임시 숙소나 보호시설 등 대피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.  
: 경찰(112), 여성긴급전화1366(1366),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(6p)
- 상처 사진, 진단서, 녹취, 문자, 메모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.
- 신고 내역, 병원 기록, 목격자 진술도 꼭 챙기세요. → 법적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.
- ※ 경찰이나 상담소의 도움으로 접근금지, 퇴거, 연락금지, 보호시설 입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.  
(대피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)

### 성폭력

- 성폭력 피해 발생시 아래로 바로 전화하세요.  
: 경찰(112), 여성긴급전화1366(1366),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(6p), 해바라기센터(7p)
- 몸을 씻거나 옷 갈아입지 말고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서로 가세요
- 현장을 그대로 두세요. 경찰이 현장 확인할 수 있어요
- 입었던 옷, 물건은 종이봉투에 보관하세요 → 비닐봉지는 습기로 증거가 손상될 수 있어요.
- 명·상처·긁힘이 있다면 사진 찍어 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

**디지털성범죄**

-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시 아래로 바로 전화하세요.  
: 경찰(112), 여성긴급전화1366(1366), 부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(051-802-2081)
- 많은 피해자들이 당황해 영상·사진을 바로 삭제하곤 해요.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고 증거로 쓸 수 없어요. 가능하면 ① 원본 그대로 보관 ② 캡처·URL 저장 ③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전문기관에 전달하세요.

| 상황                | 무엇을 해야 하나요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유포가 된 경우          | 피해 촬영물 파일, 캡처, URL 저장                      |
|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  | 촬영물 파일, 캡처본, 사이트명·키워드 등 확보<br>→ 유포 모니터링 가능 |
| 증거를 잃어버렸거나 삭제된 경우 | 경찰에 신고 → 포렌식 분석으로 복구·확보 가능                 |
| 신고 후 증거 제출 시      | 경찰과 연계해 증거 채증·유포 모니터링·삭제 지원 가능             |

- 삭제 지원, 유포 모니터링, 사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- 신고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사진·영상 외 개인정보 유출도 삭제 지원 가능해요.

**아동·청소년 피해자 안내**

**① 상담받기**

- 부모와 동행해도, 개별적으로 분리 상담이 진행돼요.
- 스스로 사이트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지 말고,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.

**② 주변 친구들이 알게 된 경우 대처하기**

- 또래 관계에서 불편함·괴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.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알려 심리상담·대인관계 상담을 받으세요.

**③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하기**

- 수사기관 신고, 학교폭력 사안 접수, 보호자·성평등가족부 통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.
- 단, 피해 학생이 통보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해요.

**④ 학생 피해자 보호조치 받기**

- Wee센터 연계 상담·치료비 지원
- 보호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·수사지원·법률지원이 가능해요.
- 2차 피해 예방과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돼요.

| 유형                | 피해자 대처 요령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스토킹 · 교제폭력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 발생시 아래로 바로 전화하세요. 임시 숙소나 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.<br/>: 경찰(112), 여성긴급전화1366(1366)</li> <li>• 집에 머무르기 위험하다면 즉시 대피하고 경찰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세요.</li> <li>• 전화번호를 바꾸지 마시고 녹음기·발신자 추적 앱·보조 휴대폰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세요.</li> <li>• 협박 편지, 문자, 이메일, 통화녹음, 택배 등 모든 접촉 기록을 모아두세요.</li> <li>• 폭행·위협을 당했다면 사진 촬영과 녹취도 함께 하세요.</li> <li>•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 직후 간단한 진술서를 받아두세요.</li> <li>• 신고 전, 육하원칙(누가·언제·어디서·무엇을·어떻게·왜)에 따라 간단히 메모하여 피해 상황을 정리하세요.</li> <li>• 피해 경과·빈도·장소·시간 등을 일기처럼 기록해두세요. → 추후 법적 절차나 상담 시 도움이 돼요.</li> <li>• 스토킹·교제폭력은 반복되고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해요.</li> </ul> |

## 성매매

-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.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돼요.  
: 경찰(112), 여성긴급전화1366(1366),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(6p)
- 협박·강요를 받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.

### 아동·청소년 피해자 안내

-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010-3069-1318(24시간)
- 성착취물, 채팅방, 문자, 사진 등은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고 증거로 사용 불가할 수 있어요.
- 가능하면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, 캡처·URL을 저장하세요.
-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전문기관에 전달하세요.
- 성착취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비밀이 보장돼요.

# 상담 지원

**☑ 지원 대상**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피해자

**☑ 상담 방법** 전화·내방·온라인·현장 상담

**☑ 상담 내용**

- 여성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피해 여부 상담 및 지원 가능
- 피해자 상담 후 의료, 수사, 법률, 주거, 보호시설, 심리치료 등 통합지원 및 지원 유관기관 연계

**! 유의 사항**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 결정

## ☎ 긴급지원센터(24시간 운영)

| 피해유형  | 기관명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통합지원* |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| 051-802-2082 |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 |
|     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   | 051-244-1375 | 서구 구덕로 179    |
|      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   | 051-501-9117 | 연제구 월드컵대로 369 |

\*통합지원 :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피해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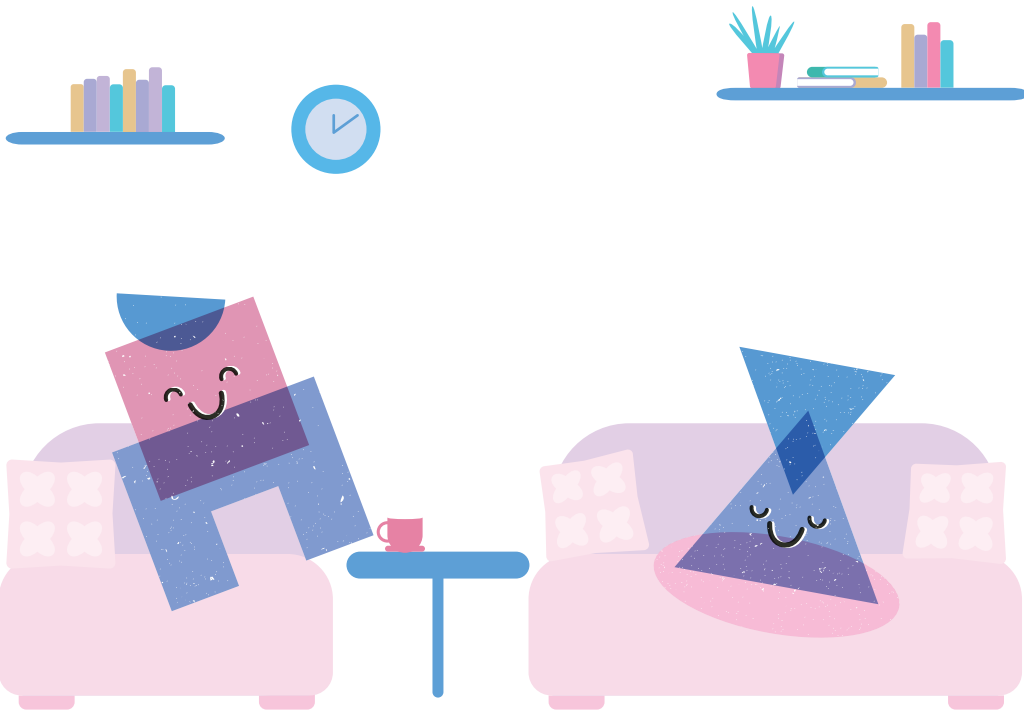
## ☎ 여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상담소

| 피해유형                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합지원                  |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       | 051-1366     |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               |
| 가정폭력<br>스토킹<br>교제폭력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462-7177 | 중구 중앙대로81번길 2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| 051-469-2987 | 동구 조방로49번길 29, 705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| 051-623-1399 | 남구 황령대로 488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 사하구 다대로 399-1               |
| 가정폭력<br>성폭력          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817-6464 |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폭력상담소 | 051-583-7735 |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-3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| 051-558-8832 | 동래구 중앙대로 1523               |
| 디지털성범죄<br>스토킹<br>교제폭력 | 다함께 성·가정 상담센터          | 051-753-1377 | 수영구 연수로 392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531-1366 |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 강서구 명지국제2로80, 비주거시설동 3층 41호 |
| 성매매                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   | 051-246-8297 | 서구 천마로 192, 501호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          | 051-816-1366 | 동래구 우장춘로 4번길 31, 2층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자활지원센터 숲               | 051-256-8297 | 서구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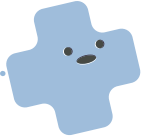
## ☎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| 센터명                   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          |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77-1295    |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<br>“햇살”   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<br>연제구, 동래구, 금정구 | 051-505-1295 |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117호                |
|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<br>“광명” 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<br>기장군             | 051-781-1295 |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19<br>부산지방검찰청 부산동부지청 417호 |
|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      | 북구, 서구, 사하구,<br>사상구, 강서구          | 051-207-1295 |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<br>부산지검 서부지청 413호    |

※ 경찰서에서 ‘사건·사고사실확인원’을 발급받은 범죄 피해자에 한해 지원 가능



# 시설보호·주거지원



경찰신고는 망설여지지만, 도움이 필요해요.

## 긴급피난처 운영

- ☑ 지원 대상**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피해자 및 동반가족  
 ※ 성매매 피해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 긴급 피난처 연계 가능
- ☑ 보호기간** 3일 이내 보호 원칙, 필요시 최대 7일  
 ※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른 보호시설 연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 까지 보호
- ☑ 지원 내용**
  - 24시간 365일 위기 상황의 피해 여성을 즉시 보호 및 필요 지원 전문시설로 연계
  - 긴급송영서비스 야간·휴일·주말·공휴일(주말·야간 송영 지원이 가능합니다.)
  - 반려동물 동반 피해자 입소 지원(센터 인근 24시간 운영 동물병원 보호)
- ☑ 문의**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051-1366

## 보호시설

- ☑ 지원 대상**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피해자 및 동반가족
- ☑ 보호기간** 임시보호(최대 7일 이내), 단기보호(6개월 ~ 최대 1년), 장기보호(2년 ~ 최대 4년)  
 ※ 보호시설에 따라 보호기간 상이
- ☑ 보호 시설** 총 12개소
- ☑ 지원 내용**
  -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
  - 의료, 법률, 심리적 회복, 자립·자활 교육 등 지원
- ☑ 문의**
  -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051-1366
  - 부산해바라기센터 051-244-1375 /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051-501-9117
  -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 6p 참조

##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

**☑ 지원 대상**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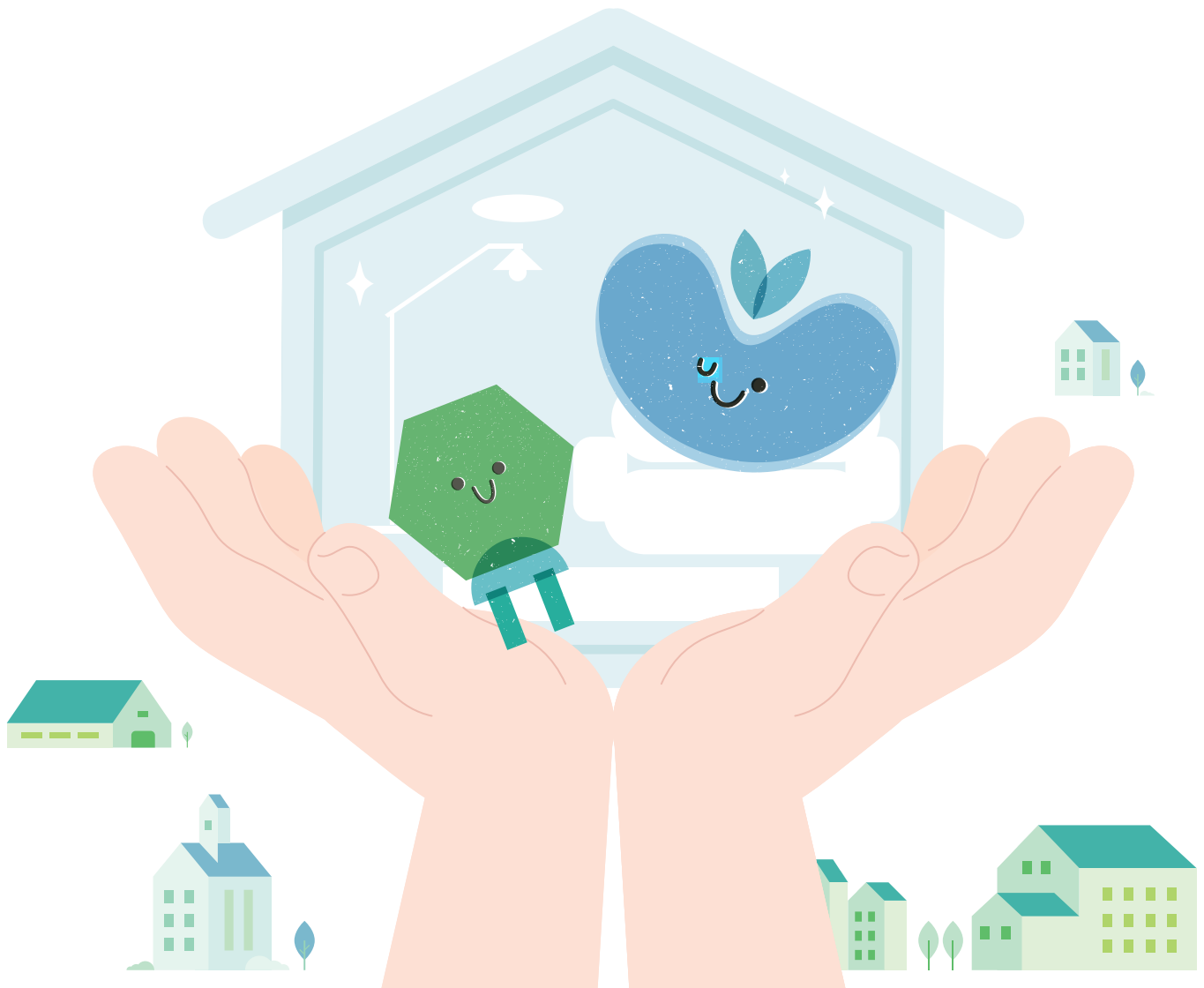
**☑ 보호기간** 임대기간 2년(2차 연장 가능 / 최대 6년)

**☑ 지원 내용**

- 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공
- 임대보증금 면제,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
- ※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(퇴거 시 반환)

**☑ 문의**

-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051-1366
-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 6p 참조



경찰 신고 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

## 스토킹피해자 주거 지원

**지원 대상** 스톱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 
(채권·채무관계·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톱킹 피해자는 제외)

- 지원 내용**
  -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(출퇴근 등) 가능한 형태의 주거 지원
  - 피해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구비 및 경찰과 연계한 피해자 안전 보호 맞춤형 지원
  - 피해자 상담 후 수사, 법률, 신변안전,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통합지원

| 긴급주거 지원(6호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대주택 주거 지원(4호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
| 원룸·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 지원<br>(30일 이내 보호) |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공간 제공<br>(3개월 이내, 1회 연장 최대 6개월 보호) |

**문의**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10-2934-2082

## 경찰의 임시숙소 지원

- 지원 대상**
    - 살인·강도·강간·방화 등 강력범죄나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
    - 성폭력,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'긴급쉼터'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
    -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※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치 비공개에 따른 담당 경찰관 동행 필수, 정신착란자·주취자·자살기도자 연계 불가

**보호기간** 1 ~ 2일 임시 체류(최대 5일)

**지원 내용** 안정성·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

**문의** 각 경찰서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보호·지원 담당경찰관



## 검찰의 안전가옥 지원

- 지원 대상**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, 성폭력·가정폭력·학교폭력·아동학대 범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 피해자, 범죄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
- 보호 기간** • 원칙적으로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의 사용허가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재판종료 시까지  
• 피해자보호시설 사용요청 검사의 사용기한 연장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 가능
- 지원 내용** 주택, 오피스텔, 원룸, 검찰공무원 숙소, 기타 일시적인 거주시설 등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이 마련한 보호시설 이용(무료)
- 문의**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## 스마일센터 단기임시주거 사업

- 지원 대상** 강력범죄, 성폭력, 가정폭력, 스토킹 등으로 피해를 입고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 및 아동·청소년 자녀
- 보호기간** 1개월 이내(필요시 연장 가능)
- 지원 내용** 기존 주거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단기 임시숙소 제공
- 문의** 부산스마일센터 051-582-1295



## ☒ 지원 요건(공통)

### ① 범죄피해자일 것

-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·정신·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
- 피해자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가족, 형제자매도 포함됨
-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나, 사망 시에는 유족도 가능(※ 보호법 제18조 기준)
- 단,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
-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(정신적·신체적 제약 시)

### • 피해 정도 요건

- 사망, 장애,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
- 다만, 살인·강도·방화·감금·체포·약취·유인·보복범죄·아동학대·성폭력·성착취 등 중대 범죄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
- 아동·청소년의 성범죄 피해, 성매매 착취 피해, 불법 촬영물 등 성적 착취 피해자도 포함

### • 신청 기한

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
-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
- 단, 보복 우려(가해자 출소·소재 발견 등) 시 기한 초과해도 예외 허용

### ②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

- 범죄로 인해 주거가 파괴되었거나, 심리적으로 이전 주거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
- 피해는 진단서, 소견서, 공소장, 판결문 등으로 입증해야 함

### ③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

- 범죄를 유발했거나 공모한 경우는 지원 제외
-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, 또는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는 배제됨  
※ 수사기록 등을 통해 판단

### ④ 주거지원 혜택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

-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거나, 피해자 지원 주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됨

### ⑤ 국토교통부 주택 요건 충족

- 국민임대주택(통합공공임대) 또는 매입·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에 적합해야 함(예 : 소득, 무주택 여부, 자산 기준 등)

## 필요서류(공통)

| 구분                | 준비서류 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주거지원 신청서<br>(심의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서(첨부1)</li> <li>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(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)</li> <li>위의 입증서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택공급 신청서<br>(LH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신청서(소정양식, 신청장소 비치)</li> <li>주민등록등본 1부(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,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)</li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• 신분증 및 도장</li> </ul> |
| 계약시(LH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등록등본(신청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) 1부(배우자와 분리된 경우,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)</li> <li>계약금(입주자부담금 이내)              • 신분증 및 도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주거지원 종류

### 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

- 범죄로 인해 주거가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(임대)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과 일상 복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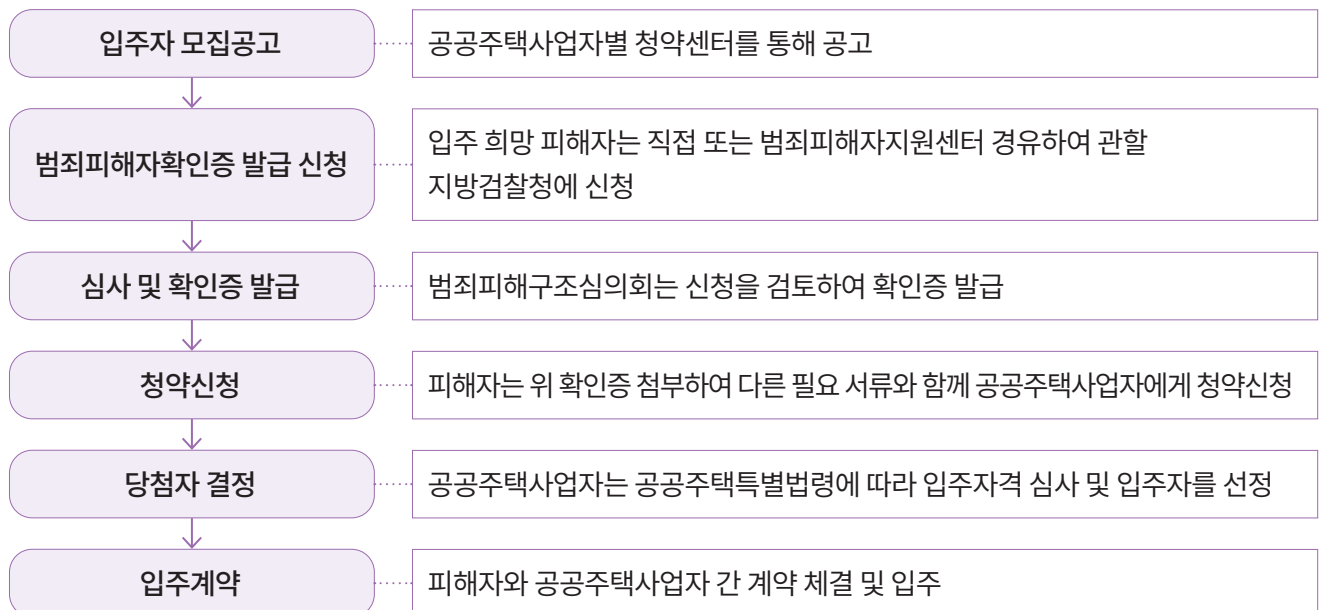
#### • 입주 자격

|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보유여부 | 소득 자산 기준  |
|---|--------|---|
| 50m <sup>2</sup> 미만                     | 무주택세대  | (소득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<br>(자산) 총자산 33,7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 |
| 50m <sup>2</sup> 이상 60m <sup>2</sup> 미만 | 구성원일 것 |   |

#### • 임대 조건

주택규모(21m<sup>2</sup>~59m<sup>2</sup>)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60~80% 수준

#### • 신청절차



## ②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

- 범죄로 인해 집에 머무르기 어렵다면 정부가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먼저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또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가 조정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.

### • 입주 자격
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인 자. 다만,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%, 2인인 경우 110%이하

| 주택보유여부      | 소득 자산 기준  |
|-------------|---|
|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| (소득)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<br>(자산) 총자산 33,700만원 이하, 자동차 3,803만원 이하 |

### • 임대 조건

입주자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부담률 차등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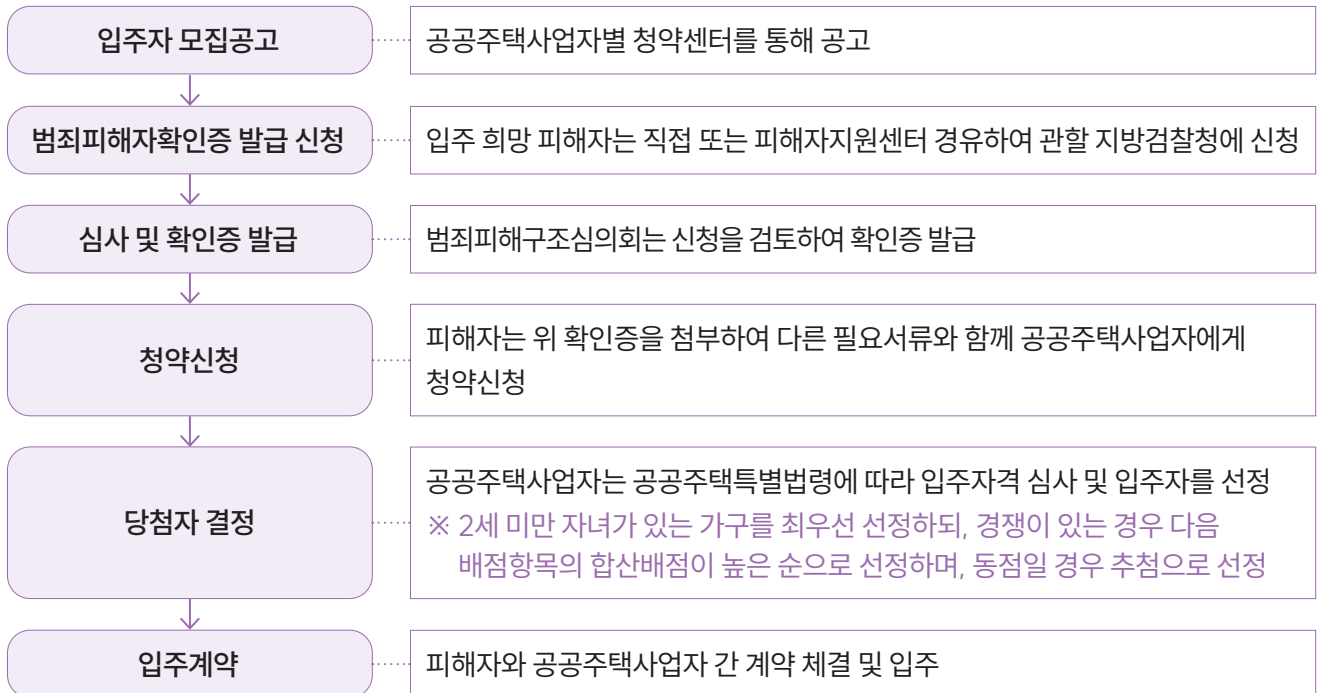
- [보증금] 임대시세 × 35% × 소득구간계수
- [임대료] 임대시세 × 65% × 소득구간계수 × 전월세전환율 ÷ 12

| 기준 중위소득    | 소득구간계수(기준 중위소득 대비)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| 0~30%              | 30~50% | 50~70% | 70~100% | 100~130% | 130~150% |
| 시세 대비 임대료율 | 35%                | 40%    | 50%    | 65%     | 80%      | 90%      |

### • 임대 기간

입주계층에 관계없이 30년(최대 거주기간 - 30년 초과 시 임대료 할증하여 계속 거주 가능)

### • 지원절차



### ③ 매입·전세 임대주택

- 정부가 기존의 일반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를 얻어, 범죄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줍니다.

#### • 주택공급 자격

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

※ 다만, 총자산이 23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차량기준가액이 3,803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주대상에서 제외

→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판단

#### • 임대조건

| 종류      | 주택보유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 자산 기준  |
|---------|---|---|
| 임대보증금   | 공급주택에 따라 상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세금의 5%</li> <li>• 지원한도액 : 수도권 13천만원, 광역시 9천만원, 기타 7천만원</li> </ul>   |
| 월 임대료   | 시세의 30%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     |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(연1~2%)   |
| 지원대상 주택 |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등 LH 보유 매입임대주택 | <p>국민주택 규모 이하(전용면적 85m<sup>2</sup>)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(단,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)</p> <p>※ 단독, 다가구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* 지원 가능</p> <p>* 오피스텔 :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</p> |

#### • 지원절차



#### 문의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,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“햇살” 051-505-1295

## 주거환경 개선

- ☑ 지원 대상**
  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(112신고는 해당 안됨)
  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  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
- ☑ 지원 내용**
  - 범죄피해자의 주거가 노후·보안장치 부족·필수시설 부재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거개선비 실제 비용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
    - \*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, 주거상태, 가해자의 상황, 조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
  - 개선기간 동안 임시 거처 필요시 1일 최대 60,000원(총 50만원) 한도 지원

**☎ 문의**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

# 의료·심리치료 지원

경찰신고는 망설여지지만, 도움이 필요해요.

## 의료 상담 및 치료비 지원

**☑ 지원 대상**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 및 가족, 성매매 피해자

**☑ 지원 절차** 상담요청(본인, 해바라기센터, 여성폭력 상담소·피해자 보호시설,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등) → 초기 상담 및 필요 확인 → 진료 및 치료 → 서류제출 → 내부 심의 및 비용 지급 → 사후 연계 지원  
※ 지원 절차나 서류, 지원 금액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

### ☑ 지원 내용

| 피해유형                | 지원내용  | 문의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디지털성범죄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리 검사 및 평가 비용</li> <li>• 신체 치료, 정신과 진료, 약제비 등 치료비 전반</li> <li>• 치료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의뢰서 발급 지원</li> </ul>  | 부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|
| 가정폭력<br>스토킹<br>교제폭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입원비</li> <li>• 임신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,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</li> <li>• 의료 보조기 지원(의사 소견서 첨부, 임차 사용 우선)</li> <li>•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, 일반의약품 구입비용,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진료비, 출산 관련 의료비 등</li> </ul> | 가정폭력 상담소          |
| 성폭력<br>스토킹<br>교제폭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치료</li> <li>•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</li> <li>•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,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</li> <li>• 진단서 발급, 기타 의료적 평가(신체사정) 및 법적 증거 확보(응급키트 등)</li> </ul>   | 성폭력 상담소           |

| 피해유형        | 지원내용  | 문의     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성매매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·검사·치료 비용</li> <li>• 상해 치료비용, 치아손상 치료 비용,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</li> <li>• 정신질환, 알코올·약물중독의 치료·보호 비용</li> <li>• 임신과 관련한 비용</li> <li>•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 비용</li> </ul>  | 성매매 상담소 |
| 가정폭력<br>성폭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체 상해 여부 확인 및 응급처치</li> <li>• 성폭력으로 인한 성매개감염 질병 검사 및 치료 지원</li> <li>• 피임을 위한 조치(응급피임약 처방 등)</li> <li>• 전문 진료(산부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응급의학과 등),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지원</li> <li>•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여부 확인 및 임신 중절 수술 지원</li> <li>•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진료 및 투약 비용 등의 의료비 지원</li> </ul> | 해바라기센터  |

**문의**

- 부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-802-2081
-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051-1366
- **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**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**• 해바라기 센터(24시간)**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돌봄비 지원

- ☑ 지원 대상**
  -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그 형제·자매
  -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
  -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
    - ※ 한부모, 맞벌이, 조손가정, 장애부모,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포함 가능
- ☑ 지원 내용**
  - 민간 베이비시터, 아이돌봄서비스, 장애아동 활동보조 등 자부담 비용 지원
  - 시간당 평균 단가 8,000~9,000원 기준
  - 가족 구성원은 돌보미로 인정되지 않음
  - 가사 중심 베이비시터도 가능
  - 지원 기간: 기본 6개월, 최대 18개월 연장 가능
  - 지원 금액: 1인당 최대 300만 원, 총 900만 원까지 가능
- ☑ 지원 절차**
  - ① 여성 폭력 상담소·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
  - ② 피해자 또는 보호자 신청
  - ③ 자부담 비용 영수증 등 제출
  - ④ 기관 확인 후 사업 주관기관에 신청
  - ⑤ 심의 후 예산 범위 내 지원

### ☎ 문의

####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#### • 해바라기 센터(24시간)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간병비 지원

- 지원 대상**
- 성폭력 피해자
  - 심각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로 입원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
  -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나 장애인 등 간병이 필요한 가족도 포함 가능

- 지원 내용**
- 간병인 고용에 드는 실비 지원
  -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가능
  - 시간제 간병, 장기 입원 간병 모두 포함 가능
  - ※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는 원칙상 지원 불가(기관 판단에 따름)

- 지원 절차**
- 진료 후 기관(해바라기센터, 상담소 등)에 신청
  - 진단서 또는 간병 필요 소견서 제출
  - 간병비 지급 여부 기관 심의
 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결정

**문의** ·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**· 해바라기 센터(24시간)**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심리상담

**☑ 지원 대상** 여성폭력 피해자 본인 및 보호자(비가해 부모, 가족 등)  
※ 성매매는 피해자만 지원합니다.

**☑ 지원 내용**

- 1:1 개인 심리상담(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)
- 피해자 보호자를 위한 가족상담, 부모상담 포함
- 심리검사 및 최대 10회기 상담 가능(센터별 상이)

**☑ 지원 절차** 상담요청(본인, 해바라기센터, 여성폭력 상담소·피해자 보호시설,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등) → 초기 상담 및 필요 확인 → 상담 일정 조율 및 진행

**☑ 문의**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51-1366

###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### • 해바라기 센터(24시간)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심리치유·회복 프로그램

**지원 대상**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 
※ 성매매는 피해자만 지원합니다.

**지원 내용**

- 미술, 원예, 요가, 음악 등 치유 활동
- 자조모임, 심신이완 등 정서회복 프로그램
- 회복캠프, 명상, 놀이치료 등 다양한 활동 제공

**지원 절차** 상담요청(본인, 해바라기센터, 여성폭력 상담소·피해자 보호시설,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등) → 초기 상담 및 필요 확인 → 그룹 또는 개별 회복 프로그램 참여

**문의**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51-1366

###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### • 해바라기 센터(24시간)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보호자·가족 심리 지원

**지원 대상** 여성폭력 피해자(성매매 피해자 제외)의 부모, 형제자매, 비가해 가족 구성원 등

**지원 내용**

- 보호자 간접 외상 상담
-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상담

**지원 절차** 상담요청(본인, 해바라기센터, 여성폭력 상담소·피해자 보호시설,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등) → 초기 상담 및 필요 확인 → 보호자·가족 심리 지원

**문의**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51-1366

**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**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**• 해바라기 센터(24시간)**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재피해 예방 교육(디지털성범죄)

**지원 대상**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

- 지원 내용**
- 1:1 재피해 예방 교육 2회기 이상 가능
  - 디지털범죄피해자의 회복 이후 자기방어 훈련, 위험상황 대처법 교육
  -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교육 횟수 추가 지원 가능

**문의** 부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-802-2081



경찰 신고 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

## 해바라기센터 증거채취 응급키트

**지원 대상**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(국민 및 적법 체류 외국인 포함, 피해자의 동의 필수)  
 ※ 유의 사항 : 응급키트는 향후 수사·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접수 후 진행해야 함

**지원 내용** • 성폭력 피해 직후 혈액형, 유전자, 약물 등 법적 증거물 채취 지원

**방문 전 유의 사항**

-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2시간(만3일)이 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합니다.
-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소변을 참고 방문합니다.
- 구강 피해가 있었다면,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고 방문합니다.
- 가능하다면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챙겨옵니다.

**문의** • 해바라기 센터(24시간)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비 지원

**지원 대상**

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
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
- 범죄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(전치 5주 미만)

**지원 내용**

- 범죄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의료기관에서 치료
- 1인당 800만원 한도 / 단일범죄피해 최대 3,000만원까지 가능(5년 이내)
-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액, 미적용건 전부·일부 감액 가능

**문의**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## 검찰청 의료지원

- ☑ 지원 대상**
  - 국내에서 범죄로 인해 신체·생명에 피해를 입은 국민 및 외국인 피해자(단, 적법 체류자), 피해자의 직계 존·비속(신청대리) ※ 예외 사유 : 가해자와의 유·무상의 합의를 한 경우, 범죄피해의 발생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, 지원 효과가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진단 5주 이상
- ☑ 지원 내용**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 1인 1건 연간 1,500만원 / 최대 5천만원 한도
- ☑ 신청방법**
  - **신청기간**  
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,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날부터 10년
  - **신청서류**
    - 범죄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: 사건사고사실확인서, 고소장, 판결문 등
    - 신청인·대리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  -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 : 진단서, 소견서, 치료비 영수증, 입·퇴원 확인서, 입원상세진료내역서, 상급병실사용확인서(해당 시)
    - 재산 및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: 지방세과세증명
- ☑ 문의**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##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 상담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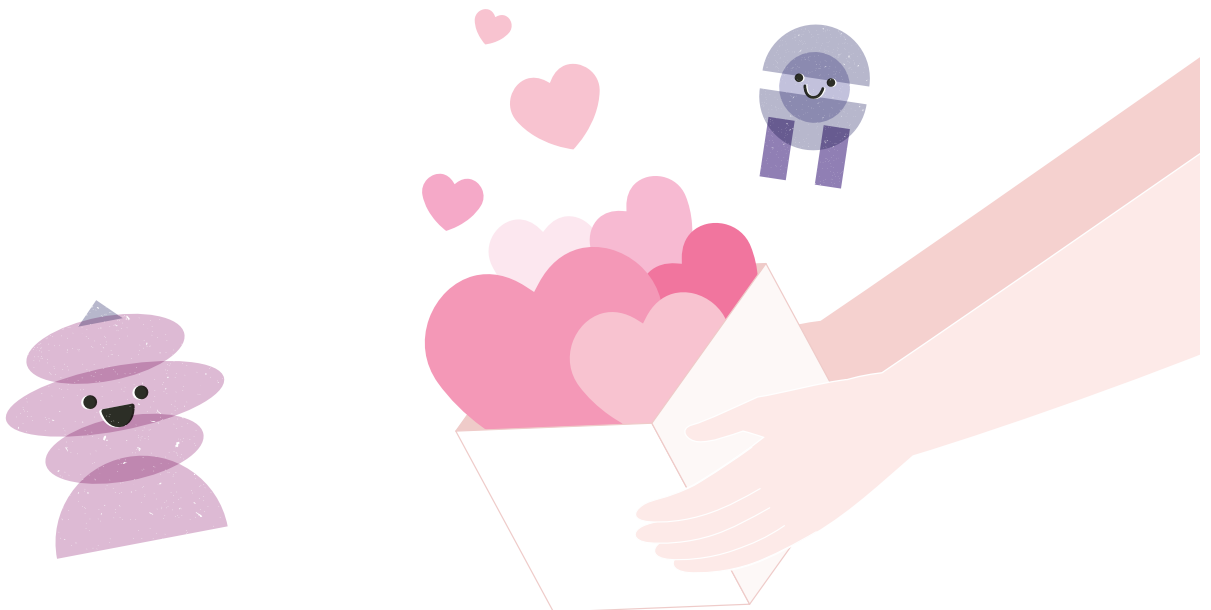
- ☑ 지원 대상**
  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
  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  -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, 현장수습자, 인근거주자 등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 당한 사람
  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피해자도 지원 가능
  - 진단 5주 미만
- ☑ 지원 내용**
  - 범죄로 인한 정신적·심리적 피해 관련 자격 보유 전문가 상담
  - 최대 50회(총 7,000만원까지) 심리 상담비 지원
  - 심리검사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가능
- ☑ 문의**
  - **범죄피해자지원센터**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## 피해자심리전문인력(CARE요원 등)

- ☑ 지원 대상**
  - 살인, 강도, 강간,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
  -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피해자 본인 및 가족
- ☑ 지원 내용**
  - 심리적 응급처치 : 강력범죄 피해 후 피해자와 가족 등 대상으로 초기단계 심리적 위기 개입을 통해 심리적 장애를 예방
  - 심리평가·상담 등을 통한 사후 관리로 피해자의 심적외상,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피해 예방
  -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각종 정보제공 및 유형별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
- ☑ 지원 절차**
  - ① 피해자에게 심리평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 발생
  - ② 사건 담당자가 사건 개요,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·장소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CARE요원에게 보고·통보
  - ③ 현장출동 및 피해자 심리평가·상담 및 기관 연계
- ☑ 문의**
  - 경찰서 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 경찰관,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  - **범죄피해자지원센터**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

##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지원

- ☑ 지원 대상** 5대 강력범죄(살인, 강도, 강간, 방화, 폭력) 피해자와 가족, 그리고 그 외 범죄 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
- ☑ 지원 내용**
- 범죄피해로 인한 휴유증 정도와 개입을 위해 심리검사 및 평가
  -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전문 심리지원팀이 개인별 맞춤형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
  - 외상이 있는 대상자의 안정화 작업, 트라우마 기억재처리, 일상으로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심리 지원
  - 유사한 피해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명상요가, 원예치유, 숲 체험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
- ☑ 신청 절차** 스마일센터에 지원요청(피해자 본인, 범죄피해자지원센터,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, 검찰·경찰·법원) → 접수 → 접수사례회의 → 지원
- ☎ 문의** 부산스마일센터 051-582-1295

## 심리상담 통역 지원

- ☑ 지원 대상**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적절한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범죄 피해자
- ☑ 지원 내용**
-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안내
  - 심리상담(외부기관 포함)
  - 회복적 경찰활동
  - 범죄피해평가
  - 농아인 수화 통역 지원 기능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통역 지원
- ☑ 신청 절차** 담당 경찰관에게 통역 지원 요청 → 통역요원 배정 및 통역지원 →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 등 외부 연계기관 연계
- ☎ 문의** 담당수사관 또는 경찰서 피해자보호·지원 담당 경찰관



## 간병비·치료부대 비용

- ☑ 지원 대상**
  - 의료기관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
  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
  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  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
- ☑ 지원 내용**
  - 의료기관 3일 이상 입원치료 시 간병인 사용비용 지원
  - 의료보조구입 필요 및 원거리 치료시설 방문시 교통·숙박·식비
  - 간병비 1인 1일 24시간 150,000원, 공동간병비 1일 75,000원 지원(단일범죄 1,500만원 / 1인당 최대 3,000만원까지 가능)
  - 의료보조기 구입비 1인 최대 50만원 지원
  - 원거리 방문 교통·숙박·식비 : 1인 1일 숙박비 60,000원, 식비 1식 8,000원(1일 24,000원), 교통비 실비 지원(총 50만원 이내)

### ☎ 문의

- **범죄피해자지원센터**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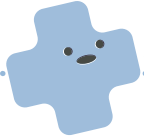
## 보험급여 지원 - 건강보험 연계

- ☑ 지원 대상**
  -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가족
  -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
- ☑ 지원 내용**
  -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
  - 가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: 범죄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원(치료 지원)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
  -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 : 범죄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원(치료지원)

- ⚙ 지원 절차**
  - 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
  - ②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
  -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제한 여부 판단
  - ④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
  - ⑤ 건강보험 적용 결정 시 치료비 중 보험급여 해당분이 공단에서 지원됨

☎ 문의     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,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
# 법률지원



경찰신고는 망설여지지만, 도움이 필요해요.

##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

- ☑ 지원 대상** •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피해자
- ☑ 보호기간** • 가정폭력, 성폭력,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교제폭력,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
  - 형사고소, 접근금지 신청 등 절차 안내
  - 법적 대응 가능 여부, 증거 수집 방법 안내
  - 수사기관 신고 전 필요한 조치

※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에 적용될 법과 절차는 알 수 있지만, 형량은 재판을 통해 판사가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.
- ☑ 신청 절차**
  - ①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여성폭력 상담소 상담 요청
  - ② 피해 상황 간단히 설명 후 법률상담 신청
  - ③ 필요 시 법률홈닥터 등 연계 기관에 연결
  - ④ 해당 기관의 전문 상담사 또는 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
- ☑ 문의**
  -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051-1366
  - **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**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
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하구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| 051-531-1366 |

##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지원

**지원 대상** 성폭력 피해자

- 보호기간**
-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행(체액, 혈흔, 상처 부위 등 증거 확보)
  - 성매매 감염병 검사 및 예방 치료
  - 응급피임약 처방 등 응급진료 및 예방처치
  - 전문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(산부인과, 정신건강의학과 등)

**지원 절차** 해바라기센터 방문 또는 112신고·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상담 → 응급진료 및 증거채취 절차 안내 및 동의 → 전문의 진료 및 필요시 소견서 발급 → 추후 법률 연계나 심리지원으로 연계 가능

**문의** • 해바라기센터(24시간)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

경찰 신고 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

## 재판 모니터링 및 동행 지원

- 지원 대상** 가정폭력·성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
- 지원 내용**
  - 피해자지원기관 관계자가 피해자 대신 재판에 참석하거나, 피해자와 동행하여 법정 출석을 지원
  - 재판의 진행 상황, 판결 결과 등 법적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
  -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록 정서적지지 제공
  - 법정에서의 안전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동반 지원 포함
- 지원 절차**
  -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여성폭력 상담소에 요청
  -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필요성 검토
  - 재판 일정에 맞춰 모니터링 및 동행 지원
- 문의**
  -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(24시간) 051-1366
  - 부산해바라기센터(24시간) 051-244-1375 /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24시간) 051-501-9117
  - 여성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32p 참조

## 영상증인신문 지원

- 지원 대상**
  - 성폭력 등으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
  - 특히, 아동·청소년(19세 미만), 장애인,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, 재판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함
- 지원 내용**
  - 피해자가 법정인 아닌 별도 공간(영상증인신문실)에서 영상장비를 통해 증언
  -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공간 분리
  - 필요시 전문가 동행, 심리적 안정 지원 병행
- 지원 방법**
  - '증인소환장' 수령 시 동봉된 '증인지원절차신청서'에 '영상증인신문 희망' 항목 체크
  - 재판부 허가 후, 영상증인신문 진행
- 문의**
  - 해바라기센터(24시간)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(법률홈닥터)

**☑ 지원 대상*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고령자, 범죄피해자(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·교제폭력, 디지털성범죄, 성매매 등) 법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취약계층  
※ 범죄피해자임을 전제로 상담을 받을 경우 범죄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경찰 신고 사실 확인서, 고소장 사본 등 필수

**☑ 지원 내용** · 무료 법률상담  
채권·채무, 임금, 상속, 이혼, 손해배상, 회생·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

· 법률문서 작성 안내  
진정서·합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성 도움

· 소송 절차 안내 및 연계  
소송 절차 설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관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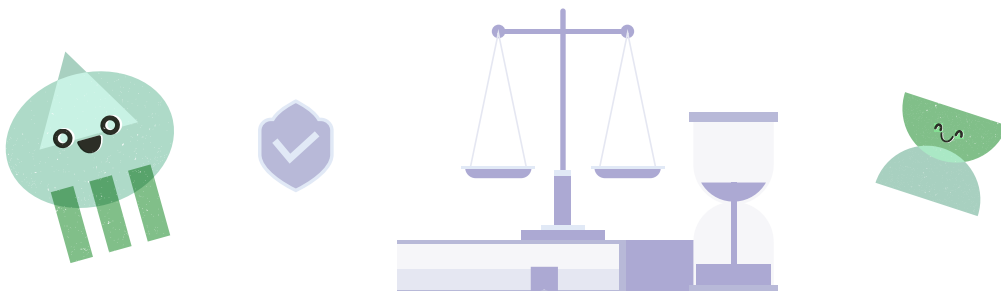
**☑ 지원 절차** ① 상담 신청 및 예약  
· 법률홈닥터 홈페이지(<https://lawhomedoctor.moj.go.kr/>) 또는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신청

② 법률홈닥터가 1:1 무료 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 
※ 상담시간 : 일반 30분 ~ 1시간, 복잡한 사안은 2시간 이상 소요

③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등 외부 기관 연계

**☑ 문의** · 법률홈닥터 홈페이지(<https://lawhomedoctor.moj.go.kr/>)

| 기관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부산광역시청   | 051-888-3155 |
| 부산 남구청   | 051-607-4316 |
| 부산 사상구청  | 051-310-4317 |
| 부산 수영구청  | 051-610-4027 |
| 부산 해운대구청 | 051-749-5689 |



## 피해자 국선변호사

**지원 대상** 성폭력·아동학대·장애인학대·스토킹·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 
※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

**지원 내용** · 수사단계의 조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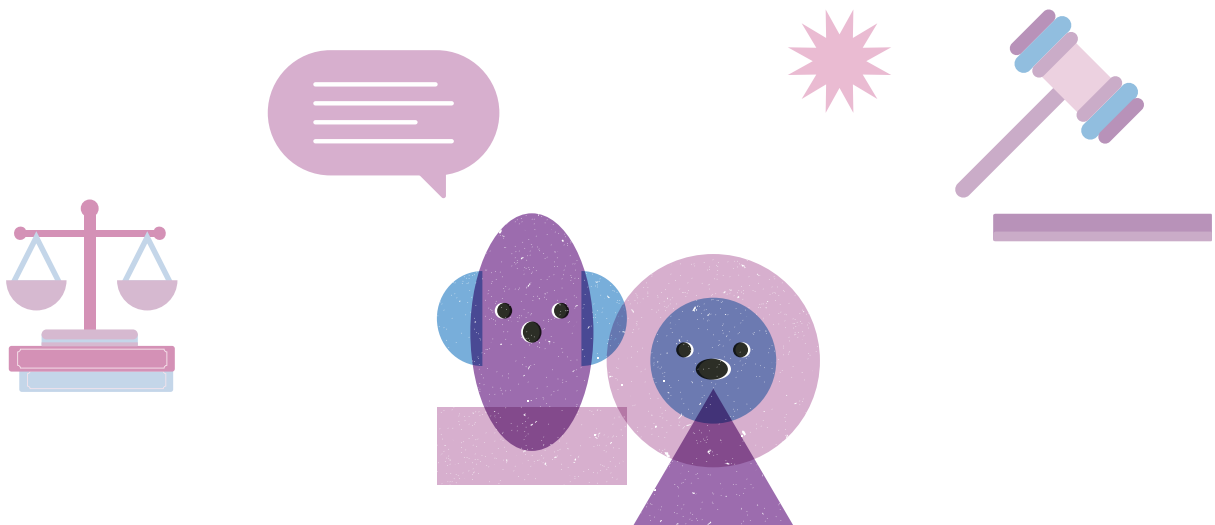
-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참여에 대해 설명, 변호사, 신뢰관계인, 진술조력인 등의 피해자 지원 내용 안내
- 조사 과정에서 구성요건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후 의견 개진
- 피해자 상담을 기초로 파악한 범죄사실, 증거관계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
-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조서, 증거,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복 위험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

· 재판단계의 조력

-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 흐름 파악 및 피해자 등에게 전달
- 양형증거 및 탄핵증거를 수집하고, 이를 토대로 의견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

**지원 절차** 경찰서, 검찰청, 해바라기센터, 여성폭력 상담소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 →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작성 후 검찰청에 팩스로 전송 → 검찰청 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보고 → 검사 검토 후 국선변호사 선정

**문의** ·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경찰관  
·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통합콜센터 1301



가. 대한법률구조공단

**☑ 지원 대상** 가정폭력, 성폭력,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교제폭력, 여성폭력 관련 민사·가사 사건  
(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번호사로 지정된 경우 외 형사고소 대리는 지원하지 않음)

- 📄 구비 서류**
- ① 신분증, 주민등록본, 도장
  - ②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」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, 성평등가족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확인한(가정폭력·성폭력)피해상담사실확인원
  - ③ 진단서(가정·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)
  - ④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
  - ⑤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진술서, 카톡 등 메신저, 녹취록, 사진 등
  - ⑥ 기준 중위 소득 125% 이하 증빙서류

| 용도            | 구비서류 및 설명  |
|---------------|--|
| 국민 또는 재외국민    | 1) 주민등록표 등본(세대주와 세대원 포함)   |
| 가구원수 확인       | 1) 외국인등록사실증명<br>국내 거주 외국인<br>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발급이 안 되므로, 그런 경우 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(아래)를 제출  |
|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 | 2) 건강보험자격(특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(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, 전화 : 1577-1000)<br>·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<br>·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, '건강보험자격확인서'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<br>· 지역보험의 경우 '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'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) 기재 서류 생략 가능<br>·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'건강보험증'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|
| 건강보험 가입자      | 직장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, 지역보험가입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연소득<br>※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|
|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확인 | 3) 아래 서류 중 택일<br>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보수지급명세서<br>③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<br>④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(국민연금공단 발행)<br>⑤ 소득금액증명서(세무서장 발행)   |

※ 보건복지부에서 작성·배포하는 '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(아래 참조)'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25% 이하인 자여야 함

☑ **지원 내용** • 1:1 무료 법률 상담

전화, 방문 모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30분 ~ 1시간 상담

• 법률 문서 작성 안내

진정서·합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성 도움

• 소송 절차 안내

민사·가사·형사 소송 절차 설명 및 변호사 선임 지원

• 형사사건 무료 변호

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피해자 변호사건에 대한 무료변호

• 소송 대리

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대리

• 강제집행 지원

승소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·강제집행 지원

☑ **지원 절차**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접수 → 사실조사 착수 및 분쟁 해결 권유 → 소송구조 심사(승소 가능성, 타당성 등) → 구조결정 · 변호사·공익법무관이 대리 소송 → 승소 후 강제집행 지원도 가능

☎ **문의** •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

| 기관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
| 부산지부    | 051-505-1648 |
| 부산동부출장소 | 051-781-0710 |
| 부산서부출장소 | 051-710-7480 |



## 나.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

**지원 대상** 가정폭력, 성폭력,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교제폭력, 여성폭력 관련 민사·형사·가사 사건

### 구비 서류 · 가정폭력

법률구조신청서, 사건관련자료(고소장, 소장, 진단서,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),  
상담확인서·입소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
### · 성폭력, 디지털성범죄

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신청서,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, 사건관련자료  
3가지 중 1가지 서류(피해사실 확인서, 진단서 또는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,  
고소장·소장 사본 및 접수증)

### · 교제폭력·스토킹

무료법률구조신청서(데이트폭행, 스토킹피해자),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 
동의서(데이트폭행, 스토킹피해자), 사건관련자료 3가지 중 1가지 서류(피해사실 확인서, 진단서  
또는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, 고소장·소장 사본 및 접수증)

**지원 내용**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, 헌법소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  
구조 지원·법률 문서 작성 안내 : 진정서·합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성 도움

**지원 절차** 법률구조 신청 → 재단심사 → 법률구조결정 → 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→ 소송집행(비용대체  
지급) → 소송종료 → 비용상환 또는 면제 결정 → 법률구조 종료

**문의**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-3476-6515



## 다. 한국가정법률상담소

- ☑ **지원 대상** • 가정폭력피해여성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취약계층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
• 북한이탈주민 및 기타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

- ☑ **지원 내용** • **법률 상담**

가사, 민사, 형사, 파산·면책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면접, 전화, 온라인, 화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

- 면접·전화 상담

평일 : 오전 10:00 ~ 오후 5:00(접수 오후 4시까지)

점심시간 : 오후 12:30 ~ 오후 1:30

야간상담 :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~ 8시(접수 오후 7시까지)

-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 상담 : 매주 월요일 오후 6시~8시(접수 : 오후 7시까지)

- **화해조정 및 무료 서류작성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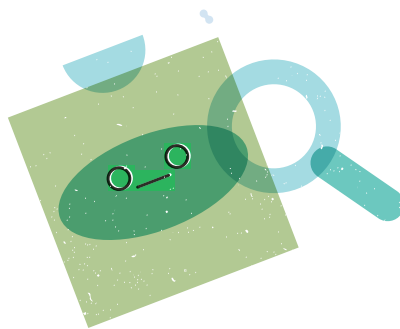
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기 위한 조정 지원 및 법률 서류(소장, 진정서 등)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대서 서비스 제공

- **무료 소송구조**

소송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변호사 무료 선임(자원봉사 변호사단 백인변호사단이 소송 수행)

- ☑ **지원 절차** 상담 및 법률 지원 신청 → 상담 및 사실 확인 → 지원 결정 → (필요 시)화해조정 및 무료서류 작성 → (소송 필요 시)소송구조 추천 → 변호사 선임 및 소송진행 → 종결

- ☑ **문의**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-7077



## 라. 한국성폭력위기센터

- ☑ 지원 대상** 가정폭력, 성폭력,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  
※ 외국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 
※ 우선지원 기준(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, 국내 거주 외국여성, 기초생활수급자, 보호시설 입소자 등)

- ☑ 지원 내용**
- **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**
    - 성폭력 피해 관련 민사, 형사, 가사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대리 지원
  - **소송 비용 지원**
    - 사건 진행 시 필요한 인지대, 송달료, 수수료 등 실비 지원
    -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외국인, 시설입소자, 장애인, 아동 등) 우선 지원
    -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, 1인당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가능
    - 2차 피해로 인한 소송(디지털콘텐츠 유포 등)도 지원
  - **변호사 수임료 지원**
    - 사건 유형별로 차등 지급(본안 사건은 최대 150만원, 재정신청·항고·기타 본안소송은 40만원 이내)
  - **외국인·청각장애인 피해자 대상 통번역, 수화통역비**
  - **재판 종료 후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비용 회수 가능**
    - ※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민사소송은 제외)

- ☑ 지원 절차**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 → 여성폭력 상담소,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법률구조 신청(연계) → 구조접수 → 구조여부 심사 → 구조결정 → 결정통보 → 변호사 선임(면담) → 수임료 신청 및 지급 → 사건진행 → 구조완료 → 소송비용 보전 청구 및 지원 → 만족도조사 및 제출  
※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(성폭력 상담소, 해바라기센터, 변호사 사무실 등)에서 신청이 가능함.

- ☎ 문의**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-883-9284~5



## 마. 한국여성변호사회

**지원 대상** 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(단, 채권·채무관계·충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제외)

**신청 방법** 홈페이지(help.kwla.or.kr), 이메일(help-kwla@naver.com) 신청

### **지원 내용** · 법률 상담

법률요청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지원 여부 판단을 위한 초기 상담 진행

### · 민사, 가사 소송지원

스토킹·교제폭력과 관련하여 계속 중이거나 진행이 필요한 소송의 지원(소장, 답변서, 의견서 작성 및 변론기일, 조정기일 출석 등 일체의 소송대리 지원)

### · 형사소송 지원

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무료변호, 수사의뢰, 수사기관 사건 조사 동행, 고소대리

### · 2차 피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, 형사 고소대리 등 지원

### **문의**

한국여성변호사회 02-6959-9965



# 신변보호

경찰신고는 망설여지지만, 도움이 필요해요.

## 범죄피해자 안전조치

- 지원 대상**
-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, 신고자, 목격자, 참고인 및 그 친족 등
  - 그 밖에,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

**□ 지원 내용**

| 구분        | 조치   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시설        | 보호시설           | 장기 보호 필요한 피해자는 유관기관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  |
|           | 임시숙소           | 신변위험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 등에게 일시 제공   |
|           | 특정시설<br>신변안전조치 |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과 그 친족,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특정시설을 제공하여 신변안전 확보  |
| 인력        | 신변 경호          | 위험이 긴박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는 한시적 경호 실시   |
|           | 맞춤형 순찰         |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 |
| ICT<br>기술 | 112시스템 등록      | 112시스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정보 등록·관리   |
|           | 스마트위치 지급       | 위치추적 및 SOS기능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의 ICT 장치 대여   |
|           | CCTV 설치        | 대상자 주거지 등에 지능형 CCTV설치, 위험요소 상시 확인, 휴대폰 CCTV앱으로 긴급신고 시 경찰 긴급 출동<br>※ 배회, 침입 등 행위 형태를 스스로 감지하여 실시간 피해자 또는 경찰서로 위험 상황 알림                     |
| 가해자       | 경고제도           |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 실시   |
| 피해자       | 권고제도           | 피해자에게 일시적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·보조 실시  |
| 기타        | 신원정보<br>변경·보호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름, 전화번호,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제도 활용 지원</li> <li>•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</li> </ul> |

## 📄 신청 방법 ① 사건이 있을 경우

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→ 신청·접수 → 담당기능심사 → 안전조치승인·기간·조치수단 결정 →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실시

## ② 사건이 없을 경우

현재지,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(긴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기능(야간이나 휴일은 당직실)을 안내받아 신청

※ 단,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안전조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음

※ 성폭력 등의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안전조치 요구할 경우 안전조치 가능

##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

-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(친권자 등)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 필요
- 신변보호 위협에 대한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고 친족, 후견인 등을 법정대리인 필요

## 📞 문의

각 경찰서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보호·지원 담당경찰관

## 주민등록 변경제도

📍 **지원 대상** 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, 성폭력피해자, 성매매피해자, 가정폭력 피해자

- 📍 **지원 내용**
-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
  - 복지, 세금, 건강보험 등의 행정(공공)기관 : 자동 변경
  - 은행, 보험, 통신 등 민간기관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: 직접 변경 신청

- 📄 **필요 서류**
-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
  -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, 신체,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증빙자료 : 상담사실확인서,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 필요 /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: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로 녹취록, 진술서 등)
  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선임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

🔧 **지원 절차**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번호 변경 신청 → 증빙자료 제출 →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(6개월 이내 / 3개월 연기 가능) → 결과통지 →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(통지일부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)

## 📞 문의

주민등록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

##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

**지원 대상**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및 자녀, 가정폭력행위자(가해자)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주민등록 열람·등초본 교부 제한</b> |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·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 가능          |
| <b>가족관계증명서 교부·열람 제한</b>  | 가해자가 피해자·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도 피해자 정보는 '*'로 비공개 처리  |
| <b>보호시설 입소자 직권조치</b>     | 보호시설 입소 중인 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·등록사항 말소 대상에서 제외(주민등록 유지) |

- 지원 절차**
- 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
  - ② '주민등록 열람·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' 또는 '가족관계증명서 교부·열람 제한 신청서' 작성 제출
  - ③ 보호시설 입소자는 시설 입소 확인서 제시 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·말소하지 않음
  - ④ 승인 후 가해자는 피해자 정보(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)를 열람·발급 불가

**문의** 주민등록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

##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(제외) 제도

**지원 대상** 가정폭력·친족성폭력 등 미성년 피해자,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하여 가해자에게 자동 피부양자 연결될 우려가 있는 자

**지원 내용** 가정폭력·친족성폭력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

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
| <b>등재 거부</b> |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             |
| <b>등재 제외</b> |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 |

※ 가해자(부모 등)에게 피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되지 않음

- 지원 절차**
- ① 「피부양자 등재거부(제외) 신청서」 작성
  - ② 신청서 + 신분증 사본을 준비
  -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·우편·팩스로 제출

**문의**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
## 가정폭력피해자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

**지원 대상** 가정폭력 피해아동,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 양육 중인 아동

**지원 내용**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타지역 전학·재입학·편입학 지원 (가해자에게 전학 사실 비공개)

|        |   |
|--------|---|
| 취학지원   |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다른 지역 학교 전학·재입학·편입학 가능          |
| 비밀전학   | 가해자(친권자 포함)에게 학교명·거주지·연락처 등 정보 비공개          |
| 학습권 보장 | 전학·재학 중 학습권 보장 및 기존 학교의 출결·평가 협조 요청         |
| 정보보호   | 전학 서류에 '가정폭력 피해' 사유 표기 → 2차 피해 방지 위해 비공개 처리 |

- 지원 절차**
- 1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'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'(상담소·보호시설·여성긴급전화1366 발급)를 준비
  - 2 전학·입학 희망 학교 또는 교육청에 취학지원 신청
  - 3 교육청이 피해사실 확인 후 전학·재배정 학교 지정
  - 4 전학 서류는 가해자에게 비공개 처리하고 학교·교육청은 전학 후에도 피해 사실 유출 방지 관리

**문의**

- 전학·입학 등 행정 절차 문의  
해당 학교 행정실 및 담임교사 / 관할 교육지원청(교육청) 학생배치 담당부서
-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문의  
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051-1366 / 가정폭력상담소,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-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경찰 신고 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

## 위치확인장치(스마트워치)

- 지원 대상**
  - 보복의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
  -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나 접근을 받는 피해자
  -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한 경우
  - 특히 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,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중 생명·신체의 위협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
- 지원 내용**
  -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확인장치(스마트워치) 지급(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)
  - 다만,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 연장 가능
- 지원 절차** 경찰서 또는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→ 신변보호 요청 신청 → 스마트워치 지급 및 사용 설명 →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
- 문의** (경찰 접수 사건) 각 경찰서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보호·지원 담당경찰관  
(사건 송치 후)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## 보안장비 지원

- 지원 대상**
  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
  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  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
- 지원 내용** 신변보호를 위한 CCTV 녹화 장비 설치·장비비 최대 200만원 지원
- 문의**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## 검찰청 이전비 지원

- ☑ 지원 대상**
  -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, 성폭력·가정폭력·학교폭력·아동학대 범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, 범죄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
  - 범죄피해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
- ☑ 지원 내용**
  - 원칙적으로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
  -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 청구하되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
- ⚙ 지원 절차**

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 → 수사 종이거나 기소한 관할검찰청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·거주지 관할 검찰청 제출 → 담당직원이 검사에게 신청서 즉시 전달 → 검사결정 → 결정사항을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전달 →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이전비 지급
- ☎ 문의**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##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전비 지원

- ☑ 지원 대상**
  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
  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  -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건(가해자 출소 등의 사유)
- ☑ 지원 내용**
  - 이사 실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
  - 대비용(수수료 등) 50만원 한도 지원
  - 주거임대로 300만원 한도 지원
- ☎ 문의**
  -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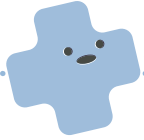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## 가명조서

- ☑ **지원 대상** 성폭력·가정폭력·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등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, 증인, 신고자 및 그 가족
- ☑ **지원 내용** 조서나 진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의 성명·연령·주소·직업 등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가명 또는 생략된 형태로 작성함으로써 신변 보호
- ☑ **지원 절차**
  - 경찰 또는 검사의 직권 또는 범죄신고 등을 한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(신청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)
  -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범죄신고 등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따로 기재하여 보관)
- ☎ **문의** 각 경찰서 수사팀,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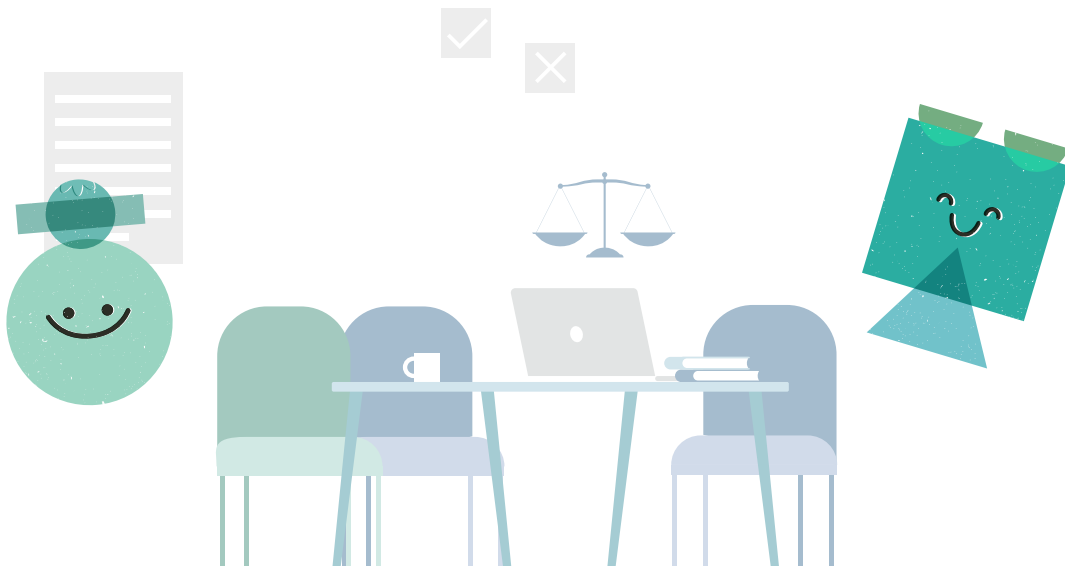
# 수사지원·형사절차상보호



경찰신고는 망설여지지만, 도움이 필요해요.

## 수사 절차 상담

- 📌 **지원 대상** 성폭력·가정폭력·디지털 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
- 📌 **지원 내용**
  - 센터에 상근하는 경찰관이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해 1:1 상담을 제공 (신고 방법, 조사 흐름, 필요한 서류 등 전반적으로 안내)
  - 피해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수사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  -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수사 절차 상담 제공
- 📌 **지원 절차** 상담 예약 후 방문 →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수사 절차 상담 → 피해자 희망 시 경찰 신고 또는 고소장 작성 지원
- 📌 **문의**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51-802-2082



## 고소장 작성 지원

**지원 대상** 성폭력·가정폭력·디지털 성범죄·스토킹·교제폭력·성매매 피해자 등 여성폭력 피해자

- 지원 내용**
- 여성폭력 피해자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법적 지원 제공
  - 피해 사실 정리 및 법적 요건에 맞게 고소장 작성 도움
  - 고소장 작성 후 관할 경찰서 접수 지원

**지원 절차** 상담 예약 후 방문 →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후 고소장 작성 지원 → 피해자 희망 시 경찰 연계 또는 신고 동행 지원

**문의**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51-802-2082

### •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상담소

| 소재지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구   |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| 051-462-7177 |
| 서구   |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상담소(성매매) | 051-246-8297 |
| 동구   |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    | 051-469-2987 |
|      |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·가정상담소      | 051-583-7735 |
| 부산진구 | 부산여성의전화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| 051-817-6464 |
| 동래구  | 부산성폭력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558-8832 |
|      |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(성매매)         | 051-816-1366 |
| 남구   |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| 051-623-1399 |
| 사하구  |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     | 051-205-8296 |
| 강서구  | 강서가족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| 051-204-8896 |
| 수영구  | 다함께 성·가정상담센터              | 051-753-1377 |
| 기장군  | 기장열린 성·가정폭력상담소            | 051-531-1366 |



경찰 신고 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

## 진술조력인

- ☑ 지원 대상**
  - 성폭력 사건의 19세 미만 피해자
  - 아동학대 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 및 13세 미만 참고인이나 증인
  - 모든 장애인 범죄 피해자
- ☑ 지원 내용**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특성에 관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·장애인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 시 동석하여 의사소통을 조력
- ☑ 지원 절차** 피해자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,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신청 → 진술조력인 선정 → 피해자 사전평가 → 조사&증언 방법 논의 → 의사소통 중개
- ☎ 문의**
  - 경찰청 국번없이 112
  -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통합콜센터 1301
  - 해바라기센터(24시간)

| 소재지 | 기관명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구  | 부산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  | 051-244-1375 |
| 연제구 |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(위기형) | 051-501-9117 |

##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

- ☑ 지원 대상**
  - **임의적 지원**  
연령,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 피해자
  - **필요적 지원**  
19세 미만자, 심신미약자,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피해자, 아동학대피해자(18세 미만)
- ☑ 지원 내용**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 시 피해자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거인, 고용주, 변호사, 상담원,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
- ☑ 지원 절차**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의 관계,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수사를 받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청
- ☎ 문의** 각 경찰서 여성·청소년 수사팀,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##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

- ☑ 지원 대상**
  -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 포함)이나 변호인
  -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나 그 밖의 통지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통지
- ☑ 지원 내용**
  - 사건처분결과 통지: 구공판, 구약식, 불기소, 이송, 소년·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
  - 공판개시 통지: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
  - 재판결과 통지: 판결주문, 선고일자,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재판 결과
  - 구금상황 통지: 피의자·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, 구속적부심사·구속취소·보석·구속집행 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
  - 출소 등 통지: 가석방일자,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
- ☑ 지원 절차** 피해자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신청 → 서면이나 문자통지
- ☑ 문의**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

## 범죄피해자 권리·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

**👤 지원 대상** 모든 범죄 피해자

**♥ 지원 내용** · **경찰·검찰**

- 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②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
- ③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정보가 포함된 안내서 제공

· **수사단계의 조력**

- 성폭력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경우 추가로 ① 형사절차상 권리
- ②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 ③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
  - ④ 피해자보호·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안내서 제공

**⚙ 지원 절차** · **경찰**

- 담당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시 규격화된 안내서(피해자권리고지 안내서) 교부
- 직접 안내서를 교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송치 전까지 전화, 우편,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제공

· **검찰**

- 검사 또는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시 안내서 교부
- 검사 또는 수사관이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,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정보,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구두, 전화, 팩스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
  - ※ ①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찰에서 안내서 교부, 안내서 직접교부가 곤란한 경우 송치 전까지 전화, 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보 제공
  - ②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
  - ③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
  - ④ 기타 정보 제공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

**☎ 문의**

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피해자보호계, 시·도경찰청 여성안전과 여성보호계·피해자보호계,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,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##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

- 지원 대상** 살인, 강도, 강간, 방화,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주거에 혈흔, 악취 등 오폐물 등이 발생한 범죄피해자  
※ 과실범죄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을 거쳐 지원 가능
- 지원 내용**
- 범죄피해 현장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
  - 특수청소를 위한 장비사용료 및 안전용품·특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
  - 인건비 등 전문업체 용역비(자원봉사자의 수고비 등은 지원 불가)
  - 일반 및 병원성 폐기물 처리비(범죄피해자와 무관하게 발생한 생활폐기물 등은 제외)
  - 지워지지 않는 혈흔 등으로 인하여 벽지·장판 등 내장재를 교체하지 않고는 현장정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 및 시공 인건비
  - 일반범죄의 경우 주거면적 기준, 6평(19.8m<sup>2</sup>)이하의 경우 최대 100만원, 6평 이상 면적은 1평(3.3m<sup>2</sup>)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 한도, 방화는 1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
- 신청기간** 범죄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  
※ 범죄행위가 추후 입증된 경우 입증된 날로부터 가산
- 지원 절차** 피해자요청(현장정리 신청) → 사건부서 지원 결정 → 현장감식 진행 → 업체 선정 및 현장정리 실시 → 증명서류 시·도경찰청 송부 → 시·도 경찰청 서류 검토 후 비용 지급
- 문의**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경찰관

## 피해자 여비지급 제도

- 지원 대상** 강력범죄(살인, 강도, 방화, 중상해), 가정폭력, 성폭력, 디지털성범죄, 데이트폭력,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중 경찰관서에서 진술조서나 (간이)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경우  
※ 범죄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·진정인은 해당되지 않음  
※ 시·도경찰청,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, 출장소, 치안센터 및 경찰관이 지정한 장소
- 지원 내용** 여비 31,000원 지급(교통실비 별도 지급)
- 지원 절차** 사건담당자가 여비지급 여부 판단 → 수사지원팀에 제출 → 여비지급
- 문의**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경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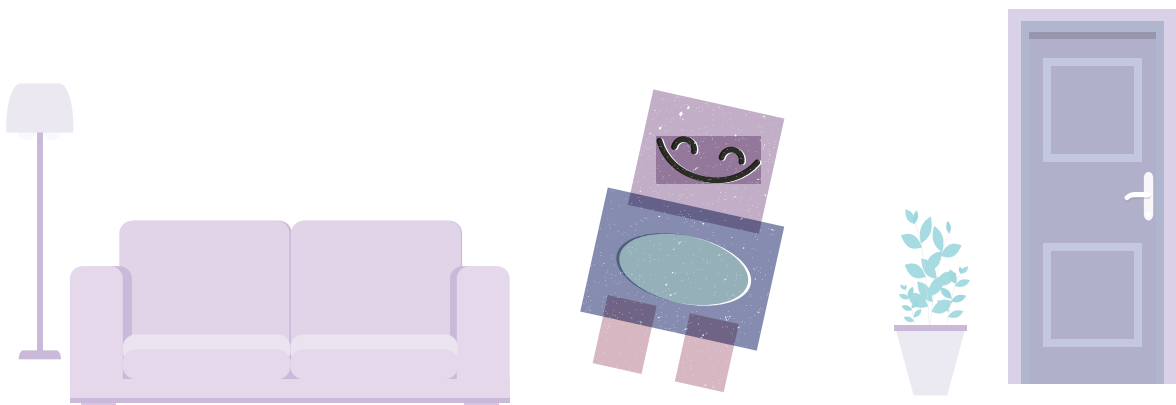
## 증인지원서비스

- ☑ **지원 대상** · **특별증인지원 서비스** : 성폭력범죄피해자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·청소년,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 증인
- **일반증인지원 서비스** : 특별증인지원 대상 외의 사건 중에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증인

- ☑ **지원 내용** · **특별증인지원 서비스**
  - 증인신문 당일 법원 입구에서 증인지원관이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을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위치한 증인지원실로 안내
  -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절차나 증인신문절차, 법정외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제공
  - 증언 후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이 상담 제공 및 휴식
  -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신변보호 제공
  - 증인의 신청에 따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재판결과 통지
- **일반증인지원 서비스**
  -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절차나 증인신문절차, 법정외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제공
  - 증언 후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이 상담 제공 및 휴식
  -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신변보호 제공

- ⚙ **지원 절차** · **특별증인지원 서비스**
  -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절차나 증인신문절차, 법정외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제공
- **일반증인지원서비스**
  - 법원 입구 안내데스크 또는 담당재판부에 신청 → 일반 증인지원실로 안내 → 서비스 제공

- ☎ **문의** 각 법원의 담당재판부 및 증인지원관



## 통·번역비 지원

- 지원 대상**
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
  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  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

- 지원 내용**
- 1인 100만원 한도, 특별결의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
  - 통역료 시간당 25,000원, 번역료 장당 국어 20,000원 / 외국어 30,000원
  - 통역인 교통비 일 20,000원 지원(최대 500,000원 한도)

**문의** •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

# 경제지원

경찰신고는 망설여지지만, 도움이 필요해요.

## 긴급복지 지원

**지원 대상** 중위소득 75% 이하 이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

※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: ① 주소득자 사망, 실직, 중한 질병·부상 ②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 등으로 주거가 어려울 때 ③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집에 살기 곤란할 때 ④ 기타 위태로운 상황 전반

## 지원 내용

| 종류             | 지원내용   | 지원금액   | 최대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|--|--|---|
| 금전<br>현물<br>지원 | 생계   |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| 1,304.9천원<br>(4인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| 6회  |
|                | 의료   |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<br>·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)   | 300만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회  |
|                | 주거   |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<br>소유의 임시거소 제공<br>·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 | 6432천원 이내<br>(대도시, 4인기준)                   | 12회   |
|                | 복지시설<br>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<br>시설운영자에게 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 | 1,4505천원 이내<br>(4인기준)                      | 6회  |
|                | 부가<br>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   |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<br>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| 초 124.1천원, 중 174.7천원<br>고 207.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|
| ②              | 그밖의<br>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<br>· 동절기(10월~3월) 연료비 : 106.7천원/월<br>· 해산비(70만원)장제비(80만원)전기요금(50만원이내) : 각 1회 |  | 1회<br>(연료비6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|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<br>상담 등 기타 지원 |  |  | 횟수제한<br>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①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

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

③ 주거지원(최대 12만원)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

**문의**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## 직업훈련비 지원

**지원 대상** 가정폭력피해자,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자

**지원 내용**

-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비
- 직업훈련비(학원비), 교통비(1인 월 10만원)

**기타사항** 보호시설 관련 정보는 6p 참조

##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

**지원 대상**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①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였고, 퇴소 시점에 19세 이상인 자 ②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(시설 퇴소 조치,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, 시설 퇴소 후 원가정(위탁가정 포함) 복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
**지원 내용**

| 구분       | 지원금액        | 지급횟수             | 지급방법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퇴소자립지원금  | 10,000,000원 | 1회 지급 또는 2회 분할지급 | 퇴소 시점 전후<br>2개월 내에 |
| 퇴소자립지원수당 | 30,000,000원 | 월 1회 50만원, 최대 5년 | 신청 및 퇴소 시 지급       |

**기타사항** 보호시설 관련 정보는 6p 참조

##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

**지원 대상**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 퇴소(퇴거)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
※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

-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
- 3개월 이상 입소 + 자립 의지가 있고 퇴소가 불가피한 경우
-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되었다가 퇴거
- 여러 시설 입소기간 합산 4개월 이상이고, 각 시설 각 공백이 15일 미만일 경우

**지원 내용** 피해자 1인당 500만원, 아동 1인당 250만원(1인당 1회 지급)

**기타사항** 보호시설 관련 정보는 6p 참조

## 성매매피해자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

**☑ 지원 대상**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용자 및 보호시설 입소자

**☑ 지원 내용** 대학입학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등록금, 학자금 지원

• **등록금**

신입생 첫학기 등록금 전액(장학금 제외)

• **학자금**

교재비, 학교 수련활동비, 교통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재학생 1인 학기별 1,000천원 이내 (학기별 분할 지급)

**☎ 문의**

-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상담소 051-246-8297
-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051-816-1366

## 서민금융 지원

**☑ 지원 대상** • **서민금융상담**

기본적으로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인 자는 서민금융상담 가능  
(자세한 사항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 통해 문의)

• **신용회복제도**

현재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  
(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-5500 통해 문의)

**☑ 지원 내용**

- 자금 대출, 채무조정,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를 각기 수행
-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종합상담, 채무진단, 맞춤대출 및 고용·복지서비스 연계 지원
- 피해자 상환능력에 따른 추천 제도 연계
- 피해자가 신용상태에 따른 추천 제도 프로세스에 따른 지원 내용 연계

**☎ 문의**

서민금융 상담 1397, 신용회복상담 1600-5500

※ 저소득·저신용자가 서민금융 상담 및 채무조정 제도를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 취업지원

- ☑ **지원 대상**
  - 일을 찾는 청년
  -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
  -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
  -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
- ☑ **지원 내용**
  - 구직신청 및 직업상담, 일자리 정보제공, 이력서 등 입사 지원 컨설팅
  - 직업능력 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
    - 고용서비스제도 안내(국민취업지원제도,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, 실업급여제도 등)
    - 국민내일배움카드, 직원훈련 생계비 대부, 청년도전 지원사업,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등
- ☑ **문의**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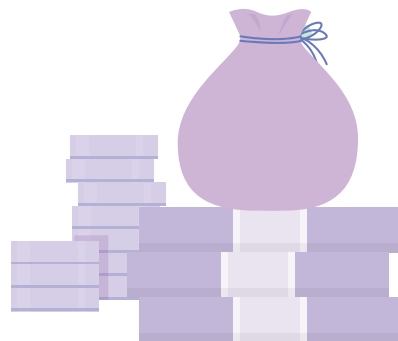


경찰 신고 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

## 범죄피해자구조금

- ☑ **지원 대상**
  -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, 범죄로 인해 장애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
  -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범죄
  -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(과실범 제외)
  -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 피해 발생
  - ※ 장애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[별표] 1~14급의 장애, 중상해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
  - ※ 친족 간 범죄의 경우,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☑ **지원 내용**
  - **유족구조금**  
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(상한 약 1억 6,039만원, 하한 약 1,336만원-2024.09 기준)
  - **장애구조금**  
장애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(상한 약 1억 3,366만원, 하한 약 334만원)
  - **중상해구조금**  
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(상한 약 1억 3,366만원, 하한 약 334만원)  
※ 구조금 액수는 매년 2차례 변동됨, 피해자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구조금 감액
- ☑ **신청기간**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,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신청
- ☑ **문의** 경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7-2584



## 검찰청 생계비·학자금·장례비 지원

**지원 대상** ·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, 직계친족 및 4촌이내의 친족)

**지원 내용** · 생계비

-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대 60만원/월, 최대 3개월 지원
- 가족이 함께라면 2인 기준 80만원, 인원 추가 시 1인당 20만원 추가 가능

· 학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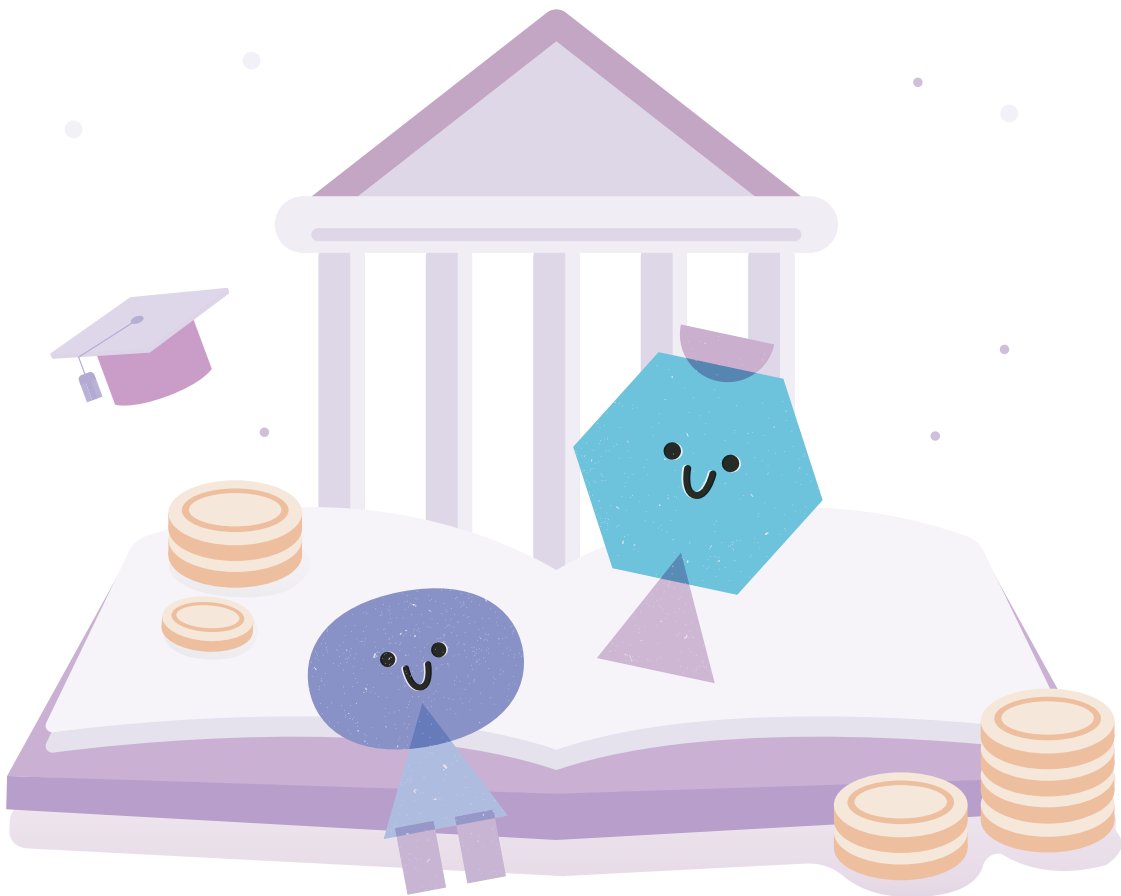
-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가 학생일 경우 학기당 1회, 최대 2회 지급
- 어린이집, 유치원(30만원), 초등학교(50만원), 중학생(80만원), 고등·대학생(100만원)

· 장례비

- 피해자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400만원 실비 지원

**문의**

각 경찰서 피해자보호·지원 담당경찰관,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-2584



##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지원

- ☑ **지원 대상**
  - 경찰신고 후 지원 가능
  -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사실확인서'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 피해자(재산범죄피해자 제외)
  -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

- ♥ **지원 내용**
  - **생계비**
    -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범죄피해로 소득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등 평소 생계곤란자의 곤란 심화 우려
    - 1인 월 70만원, 2인 120만원 / 추가 1인당 40만원씩 증액  
(예외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경우 1개월 동안만 최대 100만 원 지원)
  - **학자금**
    -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가 학생일 경우 학기당 1회, 최대 2회 지원
    - 어린이집, 유치원(30만원), 초등학생(50만원), 중학생(80만원), 고등·대학생(100만원/ 심의회의결 필요)
    - 특별결의시 2회 연장 가능(최대 600만원 까지 지원)
  - **장례비**
    - 피해자 본인 사망으로 유족이 장례를 치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
    - 장례 치러야 하는 피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500만원 지원
  - **물품지원**
    - 단일범죄 1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물품 지원
  - **취업활동·직업훈련**
    -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상 또는 심의회 인정 직종 관련 훈련 비용 지원
    - 피해자 본인의 구직활동 또는 기타 범죄피해자의 구직활동
    - 월(식비 66,000원, 교통비 50,000원 - 총 50만원까지) 기준 지급 / 최대 6개월 총 200만원 까지
  - **돌봄비용**
    - 범죄 피해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아동(13세 미만)에게 돌봄비 지원
    - 시간당 7 ~ 8,000원 돌봄비 지원 / 총 6개월, 300만원 한도
    -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(총 12개월, 900만원 한도) 가능

### 문의

#### · 범죄피해자지원센터

| 관할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센터명      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공통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577-1295    |
| 중구, 영도구, 동구, 진구, 연제구 동래구, 금정구 | 부산센터 "햇살" | 051-505-1295 |
| 남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            | 부산동부센터    | 051-781-1295 |
| 북구, 서구, 사하구, 사상구, 강서구         | 부산서부센터    | 051-207-1295 |



# 디지털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



## ☑ 지원 대상

### 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

| 유형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개념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촬영물<br>이용<br>성폭력  | 불법촬영              |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안전감을 위협하는 범죄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유포·재유포            |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물이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)을 사후에 유포·재유포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유포 협박             |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  |
|                   | 합성제작·유포<br>(딥페이크) |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얼굴, 신체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소지·<br>구입·저장      |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  |
|                   | 유통·소비             | 유포된 촬영물을 배포·전송하거나 시청·저장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,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아동·청소년<br>대상성폭력   | 온라인 성착취<br>· 그루밍  |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에게 성적 행위, 성적 노출,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하고, 이를 카메라 등 기기로 촬영하게 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|
| 사이버공간 내<br>성적 괴롭힘 |                   | 텍스트 성적 괴롭힘, 이미지 도용,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을 포함하며, 주로 비동의 유포나 합성·편집과 함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욕적 DM을 발송하는 형태       |
| 몸캠피싱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채팅앱·영상통화로 성적 영상을 녹화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탈취해 녹화물을 유포·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|
| 유포불안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불법촬영 의심이나 피해 정황은 있으나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불안과 단순 불안 모두를 포함  |

## ☑ 상담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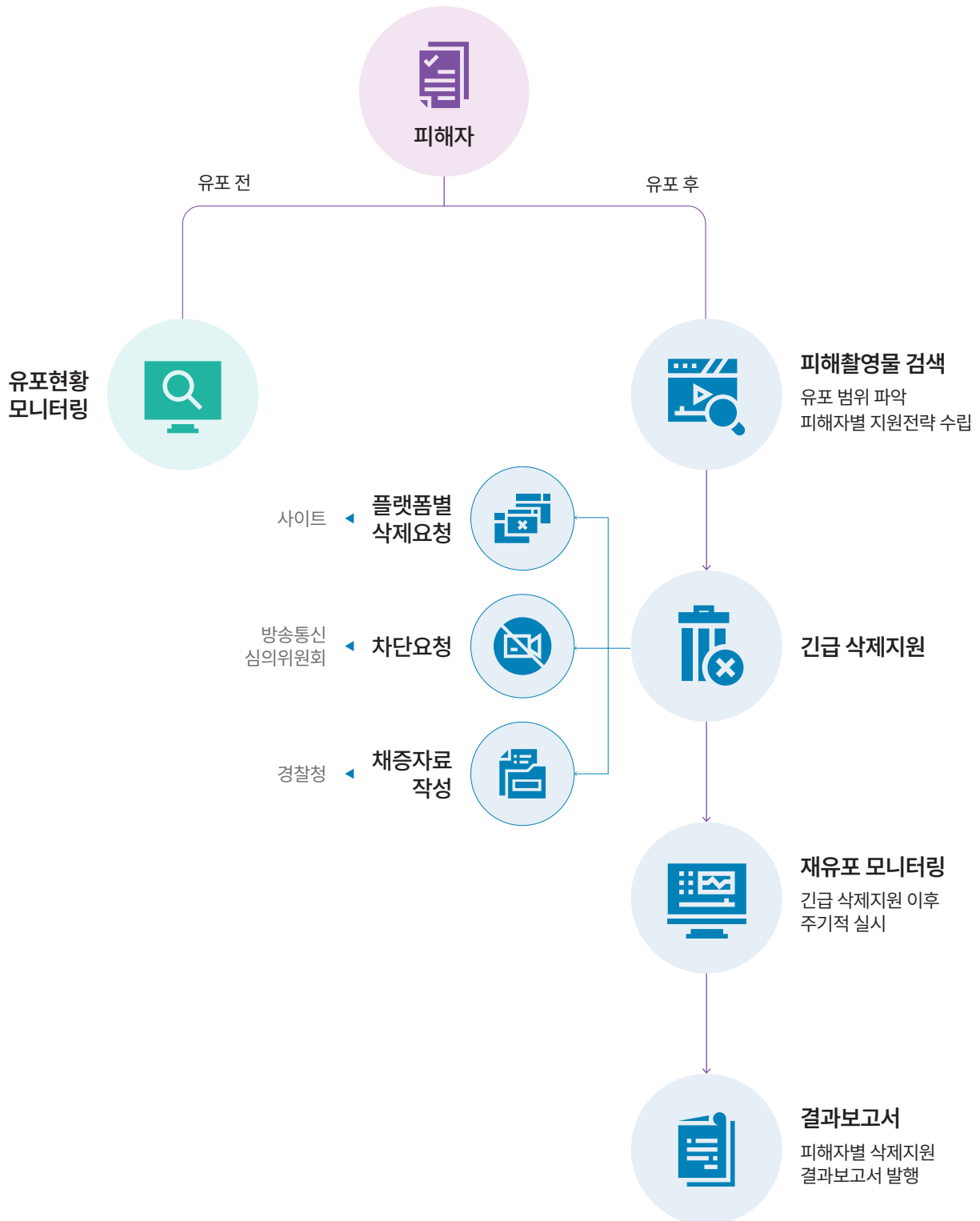
전화·내방·온라인·현장 상담

## ☑ 지원 내용

- 피해 영상물 삭제 : 국내외 사이트 대상 삭제 요청, 차단 조치 진행
- 모니터링 및 유포 감시 : 유포 현황 감시, 재환산 여부 확인
- 결과 보고서 제공 : 삭제 확인 및 진행 결과 문서화 제공
- 수사·법률·의료·심리 상담 연계 :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통합 원스톱 서비스 연계

## 🔧 삭제 지원 흐름도

삭제지원이란 유포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,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과 완료 확인,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사후조치를 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.



## ☎ 문의

부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-802-2081

# 고소장 작성 방법



## ☑ 고소장이란?

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(경찰서, 검찰청)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며,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증거 수집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.

## ☑ 고소장서식

부산경찰청 홈페이지 접속 → 정보마당 → 각종 민원서식 다운로드 → 수사 → 고소장

## ☑ 고소장 작성 방법

### ① 제목

“고소장”이라고 기재함

### ② 고소인(피해자) 인적사항

이름, 연락처, 주소 작성

### ③ 피고소인(가해자) 인적사항

이름·주소 등 아는 범위 작성, 모를 경우 특징·별명·온라인 ID 등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상세히 작성

### ④ 고소취지

피고소인의 해당 죄명과 처벌의사를 명시하는 문장으로 작성할 것(필요시 죄명 생략 가능)

### ⑤ 고소사실

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(누가, 범죄발생 일시·장소, 범죄 방법, 범죄 피해내용, 고소인 현상태) 2~3줄로 간단히 작성함

### ⑥ 증거자료

- 문자·카톡·사진·진단서·CCTV·진술서 등 고소장 본문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나열
  - 원본을 가능한 제출하고, 사본을 별도로 보관
  - 피해자가 직접 편집하면 신빙성에 문제 생길 수 있으므로, 강조할 부분은 밑줄·형광펜을 활용
  -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고소할 수 있고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음
- ※ 범죄 피해와 관련된 증거는 많을수록 수사에 유리합니다. 또한, 차후 진술 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.

#### 증거자료 예시

- 가. 상담 사실 확인서 : 성폭력상담소·여성긴급전화1366 등에서 받은 상담 내역 확인서
- 나. 진단서·소견서 : 병원 진료 후 발급, 사건 직후 발급이 중요함. 성폭력·상해 사실 기재
- 다. 증거 사진 : 신체 상처, 파손된 물건, 범행 장소 등 촬영 사진
- 라. 목격자 확인서/진술서 :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기록

마. 피해 사실 알린 사람의 진술서 :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알린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
 바. 가해자 작성 문서 : 사건 관련 편지, 각서, 진정서 등  
 사. 메신저/이메일/SNS 캡처 : 피해자·가해자 간 대화, 협박·스토킹·강요 증거  
 아. CCTV 영상 :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 
 자. 다른 피해자의 진술 : 동일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의 진술  
 차. 휴대폰 통화기록 : 피해자와 가해자 간 통화 내역  
 카. 피해자 작성 문서 : 피해자의 일기, SNS, 이메일 등

## ⑦ 제출기관

-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, 피해자 거주지 경찰서에서도 접수 가능
-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세부 내용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는 “범죄사실 부분만 열람 허용, 그 외는 불허”라는 문구를 고소장 상단에 기재하여 가해자의 고소장 열람복사에 대비할 수 있음.

## ☑ 고소장 작성 시 TIP

### ①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

- 과장이나 추측 없이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**사실 그대로 작성**
- “00월 00일 00시경 00라는 말을 했다.”와 같이 **구체적으로 작성**
- 경찰·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**일관성 있게 진술**
-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관하여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은 개인이 별도 보관
-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 시도하는 방법은 협박이나 회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
### ② 가해자의 고소장 열람·복사 대비

고소장 작성 하단에 “고소장에 포함된 개인정보(주소, 연락처, 신체 정보 등)는 피고소인에게 유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, 피고소인의 열람·복사 범위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 표기

### ③ 2차 피해 예방

-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모욕적인 질문 발생 가능
- 변호사, 상담원, 국선변호인, 피해자 지원기관의 동행(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) 요청 가능

### ④ 기록 하기

- 사건 발생 직후부터 날짜·시간·상황 메모
-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영상·사진 삭제 금지, 원본 보관

### ⑤ 신변보호

- 가해자가 가족·연인·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일 경우 보복 위험 존재
- 고소장 접수 시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명령, 임시보호조치 등 신청 가능

### ⑥ 범죄 유형별 주의사항

- **성폭력** : 증거 보존을 위해 사건 직후 샤워·탈의 전 즉시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 연락
- **가정폭력** : 단발 사건뿐 아니라 반복된 폭행·협박 사실을 모두 기록
- **성매매** : 강요·알선 정황을 입증할 문자, 계좌내역 등 확보
- **디지털성범죄** : 유포 경로, 피해촬영물원본, 캡처본, 게시물주소(URL), 키워드 등 제출해야 함
- **교제폭력·스토킹** : 지속적 연락·접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